



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 경과 및 향후 계획

2019. 12.

사법행정자문회의 운영지원단

1. 검토 배경

- 2019. 9. 26. 개최된 제1차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, “상고제도 개편 논의의 중요성·시급성에 비추어 볼 때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해당 주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고, 이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로서의 ‘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’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”는 점에 관하여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였음
- [참고] ‘사법행정자문회의 제1차 회의 결과 보고’ 중 관련 내용

자. 상고제도 개편 관련 논의

2) 특별 분과위원회로서 ‘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’ 설치 여부에 관한 논의

-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위원 전원이 동의하였으므로, 의장은 분과위원회로서 ‘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’를 설치하기로 하고, 위원들에게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였음

2.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성격 등

■ 성격 - 특별 분과위원회

-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설치되는 ‘분과위원회’ 중의 하나임
- 분과위원회 중에는 ① 종기의 정함 없이 지속적으로 소관 안건에 관한 연구·검토를 담당하는 ‘상설(상임) 분과위원회’와 ② 활동기간을 정하여 특정 안건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‘특별 분과위원회’가 있을 수 있음

■ 설치 근거

-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제8조

제8조(분과위원회의 설치와 구성) ① 의장은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분과위원회는 사법행정자문회의가 회부한 안건을 연구검토한다. 다만, 의장은 사법행정자문회의의 개최 전이라도 사법행정자문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연구검토할 안건을 회부할 수 있다.

③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상 15인 이하로 하고,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분과위원회의 소속을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.

④ 분과위원회는 법관이 아닌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.

⑤ 분과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를 1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.

⑥ 대법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임명 또는 위촉과 관련하여 공개적인 신청을 받거나 대법원의 기관, 각급 법원 또는 외부 단체 등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.

3.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 관련 경과 보고

가. 의견조회를 위한 구성(안)

■ 구성(안)의 내용

- 인원 수: 위원 약 10명
- 법관 2명
 -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로부터 각각 1명씩 추천받음
- 변호사 2명
 -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추천받되, 수도권과 지방권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각 1명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
- 검사 1명
 - 법무부로부터 검사 1명을 추천받되, 제도개선 및 개정입법에 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중견 검사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
- 법학자 약간 명



- 상고제도 관련 전문성이 있고 명망이 있는 중견 학자를 추천받거나 섭외

- **비법률가 약간 명**

- 법률가 이외의 국민 의견을 대변하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인사를 추천받거나 섭외

나. 구성 경과

- **구성(안)에 대한 의견 조회**

- 2019. 11. 15. 위 구성(안)에 대한 의견 조회(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대상)
- 2019. 11. 15. ~ 11. 20. 위 의견 조회에 대한 의견 회신

- **각 기관에의 추천 의뢰 및 회신 등**

- 2019. 11. 21. 전국법관대표회의, 대한변호사협회, 법무부에 각 위원 추천 의뢰 공문 발송 및 전국법원장커뮤니티에 위원 추천 안내
- 2019. 11. 26. 법무부 공문 회신
- 2019. 11. 28.까지 전국법원장회의의 후보 추천
- 2019. 11. 29. 대한변협 공문 회신
- 2019. 12. 2.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대상자 선정

- **학계(전문가) 및 시민단체 등 위원 선정 절차**

- 전문성, 경력, 연령, 성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최종 위원 선정 예정

- **위원회 구성은 2019. 12. 중순 완료 예정**

4.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회부 사항

- **기능 및 담당 업무**

-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『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』 제8조 제2항에 따라,



사법행정자문회의 또는 의장이 회부한 안건의 연구·검토를 담당하게 됨

■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연구·검토 사항

● 일응 다음의 내용을 연구·검토 사항으로 상정할 수 있음

- ① 기존의 각종 상고제도 개선 방안의 장단점 검토 및 각 방안에 따른 영향 분석
- ② 법조인 및 국민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검토(연구·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방식으로 의견 수렴 실시 포함)
- ③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상고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(반드시 단일 방안일 필요는 없으나 향후 추진 가능할 정도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검토)

5. 향후 계획(안)

- 2019. 12. 12.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차 회의에서 위원 구성 보고
- 2019. 12. 중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1차 회의 개최
- 2020. 상반기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 및 연구·검토 결과 보고

6. 사법행정자문회의 논의 사항

- [논의]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 구성(안)에 관한 의견 수렴
- [논의]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안건(연구·검토 사항)에 관한 의견 수렴
- [논의] 향후 계획 및 보고 시한 등에 관한 의견 수렴 <끝>